

## 조정신청서

조정번호 20 조정

신청인	이 름 (법인명): 주식회사 스키라이브 (대표이사 명품용) 주 소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 전 화 ☎ 02-500-1234 휴대전화 010-000-1234 이메일 live@skilive.co.kr
피신청인	이 름 (법인명): 홍길동 주 소 (157-857)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6~7층 전 화 ☎ 02-2660-0000 휴대전화 010-123-1234 이메일 dc@copyright.co.kr
신청취지	
신청원인	별지 기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주식회사 스키라이브 (대표이사 명품용)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조정비용
1. 조정신청서 부분(피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부수의 부분 제출)	1백만원 미만 : 10,000원
2. 신분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 30,000원
3.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50,000원
※유의사항	1천만원 이상 : 100,000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 50,000원 ※다수의 신청취지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비용 합산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자택(사무실)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담당자가 있을 경우 그 성명과 연락처도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는 각 장마다 각각 간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취지 (예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조정을 구합니다.<sup>12)</sup> 끝.

## 신청원인 (예시)

신청인은 스키용품 전문지 <월간 스키라이브>책자를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피신청인의 사진 5컷<sup>13)</sup>을 7월에서 9월까지 3달<sup>14)</sup>에 걸쳐 <월간 스키라이브> 1면(국배판)에 전면의 약 1/3 정도의 크기로 하단부에 게재<sup>15)</sup>하였습니다 (첨부3, 4 참조).

피신청인은 인터넷상에서 사진동호회 활동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입니다. 피신청인은 2005. 9. 10.자로 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첨부5참조<sup>16)</sup>)을 보내어 피신청인이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10일에 눈사람 스키장에서 주변 경치를 소재로 촬영하여 2004년 1월 15일에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5컷<sup>17)</sup>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신청인의 사진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출처표시 없이 이용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신청인은 그 사진들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사진인 줄 알고 피신청인이 저작자라는 것을 모르고 이용한 것이며 고의로 침해한 것입니다.

12) 신청취지 작성례1(특정금액 이하로의 조정을 원할 경우)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 있어 90만 원 이하로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조정을 구합니다'

13) 신청인이 침해한 저작물의 종류와 수량(정도) 기재

14) 침해기간 명시

15) 침해물과 침해형태 명시

16)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기재하고 구두나 유선,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내용 기재

17) 저작물의 제호, 종류, 수량 기재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 2005. 10. 1.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첨부5 참조)18)을 보내 침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2005. 10. 7. 전화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금 3,000,000원(금 삼백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온 바, 피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러한 침해행위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사진 대여의 경우 1컷당 10만 원~20만 원정도(1년 기준)인 점, 실제 사용 기간이 3달인 점, 신청인이 전문사진작가가 아닌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점, 사진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이용한 점, 이 사진으로 신청인의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 지금도 네이버를 통해 쉽게 검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의 조정이 되길 원합니다. 끝.

### 첨 부 서 류 (예 시)

1. 원본사진 1부.
2. 침해증거물 1권.
3. 침해비교대조표 1부.
4. 피신청인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 사본 각1부. 끝.

18)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기재하고 구두나 유선,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내용 기재

# 조정신청서

조정번호 20 조정

신청인	이름 (법인명): 홍길동 주소 (157-857)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서울강남우체국 6~7층 전화 ☎ 02-2660-0000 휴대전화 010-123-1234 이메일 dc@copyright.co.kr
피신청인	이름 (법인명): 주식회사 스키라이브 (대표이사 명품용) 주소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34 전화 ☎ 02-500-1234 휴대전화 010-000-1234 이메일 live@skilive.co.kr
신청취지	
신청원인	별지 기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홍길동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b>※첨부서류</b> 1. 조정신청서 부분(피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부수의 부분 제출) 2. 신분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3.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b>조정비용</b> 1백만원 미만 : 10,000원 1백만원~5백만원 미만 : 30,000원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50,000원 1천만원 이상 : 100,000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 50,000원 <b>※다수의 신청취지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비용 합산</b>
<b>※유의사항</b>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자택(사무실)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담당자가 있을 경우 그 성명과 연락처도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는 각 장마다 각각 간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신정취지 (예시)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3,000,000원(금 삼백만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작,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침해물 <월간 스키라이브>를 조정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기처분 한다<sup>1)</sup>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끝.

## 신청원인 (예시)

신청인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틈틈이 여행을 하며 취미삼아 사진을 찍어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등 사진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10일<sup>2)</sup>에 눈사람 스키장에서 주변 경치를 소재로 사진 5컷<sup>3)</sup>을 촬영하여 2004년 1월 15일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며, 일주일 뒤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등록번호:C-2004 - 123456)<sup>4)</sup>을 하였습니다(첨부1, 2 참조).

피신청인은 스키용품 전문지 <월간 스키라이브>책자를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본격적인 스키 시즌에 대비하여 신청인의 사진 5컷<sup>5)</sup>을 허락 없이 7월에서 9월까지 3달<sup>6)</sup>에 걸쳐 <월간스키라이브> 1면 (국배판)에 전면의 약 1/3 정도의 크기로 하단부에 게재<sup>7)</sup> 하였습니다(첨부3, 4 참조).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아마추어 작가로서 신청인의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1)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청취지이므로, 앞의 손해배상청구와 별건으로 계산되어 조정비용은 총 8만원 [손해배상 및 위자료 300만 원(조정비용 3만 원) + 침해물에 대한 폐기처분(조정비용 5만 원)]이 됨.

2) 저작물을 창작한 연월일 기재(가능하면 정확한 날짜까지도 적는 것이 좋음)

3) 저작물의 제호(제목), 종류, 수량 기재

4) 저작권등록이 된 경우에만 기재(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저작자 및 창작일자의 법적 추정을 받고 등록된 저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침해했을 경우 그 과실이 추정되는 등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5) 피신청인이 침해한 저작물의 종류와 수량(정도) 기재

6) 침해기간 명시

7) 침해물과 침해형태 명시

이러한 침해사실을 우연히 알고 2005년 9월 10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첨부5 참조)<sup>8)</sup>을 보내 손해배상과 공개적인 사과 및 출판물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내용증명(첨부6 참조)<sup>9)</sup>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침해행위로 신청인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신청인이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사진을 사진집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보통 1컷당 20만 원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5컷을 이용하였으므로 재산적 손해는 100만 원(20만 원 5컷)이며,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나 평소 아는 지인들로부터 아마추어 작가가 상업용으로 사진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였다는 등의 오해를 받아 예술을 추구하는 작가로서 회복 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명예훼손과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으므로 그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 원<sup>10)</sup>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금 3,000,000원(금 삼백만원)을 청구합니다. 끝.

### 첨 부 서 류 (예 시)

1. 저작권등록증 사본 1부(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 제출).<sup>11)</sup>
2. 원본저작물 1권.
3. 침해증거자료 1권.
4. 침해비교대조표 1부.
5. 피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사본 1부.
6.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우편 사본 1부. 끝.

8)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기재하고 구두나 유선,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내용 기재

9) 피신청인의 내용증명 등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을 경우 그 내용 기재

10) 조정신청 청구 금액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을 통상 피신청인의 침해로 발생한 신청인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나 분쟁 대상물을 이용하여 부정으로 취득한 피신청인의 이익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명시

11)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따로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행사를 할 수는 있으나, 저작물이 언제 창작 또는 공표되었는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입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먼저 등록할 경우 등록자가 권리자로 법상 추정되어 실제 저작자로서의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이 좋음.